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

제정 2018. 1. 23.

제1장 총 칙

제1조(설치근거) 대한민국농구협회(이하 “본회” 라 한다) 정관 제38조에 따라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본회 정관 제4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여 선수들의 경기력향상과 지도자 양성을 도모하며 농구발전과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각급 국가대표 경기력향상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각종 국제경기대회 참가 경기임원 선임, 각급 국가대표 선수선발에 관한 사항
3. 각급 국가대표 훈련계획, 훈련지도, 훈련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4. 각급 국가대표 훈련참가 경기임원 및 선수의 상벌에 관한 사항
5. 농구지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6. 우수소질 보유자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7. 각급 국가대표 파견 임원 및 선수 전형 추천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위원 7명 이상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 남.녀농구로 구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회의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등)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 정관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3. 본회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4.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 등록팀 관계자 1명, 시도종목 단체 또는 전국규모연맹체 임원 1명, 여성 1명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회의소집 등)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U16~U19, 대학, 성인) 남녀농구 국가대표를 세분화하여 회의를 소집,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

제11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경비의 지급) 본회 정관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8.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2018. 1.23.)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